



IMMIGRANT SERVICES CALGARY

12th Floor, 910-7 Avenue SW
CALGARY, ALBERTA T2P 3N8
Tel: (403) 265-1120 Fax: (403) 265-1167

ISC 소득신고 서비스 예약 및 법적 책임 면제 동의서

귀하의 소득신고서비스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:

날짜: _____ 시작 시간: _____ 소득신고대리인: _____

귀하의 소득신고서비스를 위한 약속에 **반드시 이 양식을 지참하십시오!** 그리고 **시간을 엄수**해 주십시오!
만일 늦으시는 경우, 12 층 리셉션으로 미리 연락하여 담당 소득신고대리인 연결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. 전화번호: 403 265-1120

ISC에서는 **E-File** 을 통한 전자소득신고가 가능합니다.

귀하께서 예약 이틀 전까지 **모든** 서류가 준비되지 않았거나, 예약 변경이 필요하거나, 혹은 예약 취소를 원하시는 경우, **담당 카운슬러** _____ 에게 **전화** _____ 혹은 **이메일** _____ 로 연락주십시오.

ISC 는 귀하의 소득신고의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

귀하의 소득신고는 자원봉사자들의 능력내에서 최선을 다해 완료됩니다. 다음의 **법적 책임면제 동의서**에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.

나는 캘거리 이민자 협회 (Immigrant Services Calgary) 의 자원봉사자에 의해 본인의 소득신고가 완료되었음을 알고 있으며, 자원봉사자는 **캐나다 국세청(Canada Revenue Agency)의 직원 혹은 전문 세무대리인이 아님을** 알고 있습니다. 나는 소득신고에 실수가 있더라도, **자원봉사자, 캘거리 이민자 협회 혹은 캐나다 국세청에 그 실수에 대한 법적책임을 물을 수 없다**는 것을 알고 이에 서명합니다.

고객 전화 번호: _____

고객 성함	파일 #.	고객 서명	서명일	FILED?

소득신고가 필요한 **모든** 가족 구성원은 주중에 소득신고 약속에 **반드시** 참석해야 합니다. **토요일에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가족은 신고가 필요한 가족 전원이 반드시 참석해야 하며 예외는 없습니다.** 만일 주중 약속에 가족원 중 일부가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, 참석한 다른 가족원이 불참자의 모든 서류를 지참하고 방문해야 하며, 불참자의 소득에 관한 모든 질문에 답변할 수 있어야 합니다. **소득신고 약속에 참석시 가족의 모든 서류가 사전에 반드시 준비되어 있도록 하십시오.** 불참한 가족은 소득신고대리인의 사무실로 사진이 있는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하여 소득신고 서류에 관한 설명을 듣고 서류에 서명하여야 서비스가 완료됩니다.

소득신고가 필요한 개개인인 다음의 신분증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(무소득으로 신고 하는 경우도 동일):

- **사회보장번호 (SIN)** 그리고
- 만일 **2018 년 3 월 혹은 그 이전에 19 세가 되는** 자녀가 있다면, 해당 자녀의 소득신고도 하셔야 합니다 (자녀가 2016 년도에 소득이 없어도 해당), 자녀가 19 세가 되면서부터 부가가치세 환급액(**GST rebate**)를 받게 하기 위함입니다. 자녀의 SIN 를 지참해 주십시오.
- 만일 귀하에게 2016 년에 **19 세 미만인** 자녀가 있었다면, 정부가 발행한 자녀의 이름 철자와 생년월일이 기재된 신분증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. 예) 알버타 건강보험 카드. 만일 이 자녀들이 2016 년도에 일을 했거나 펀딩을 받은 적이 없다면 소득신고는 불필요합니다.

만일 귀하께서 **2015 년도에** 소득신고를 하셨다면 **2015 소득평가서 (Notice of Assessment) 혹은 2015 소득재평가서(Notice of Reassessment) 전체 페이지**를 가져오십시오. (소득 및 공제항목이 기재된 면만 가져오시면 안됩니다).

만일 귀하께서 **2016 년도에** 이민을 오셨다면:

- 귀하의 영주권 카드 혹은 귀하의 여권과 랜딩 서류를 지참하십시오.
- 귀하께서 **캐나다 도착전 해외에서 번 총 소득액 (세전)** 정보를 가져오십시오. (귀하께서 이미 부가가치세 환급액(GST Rebate) 혹은 캐나다 자녀세액공제 (CCTB) 등을 신청하셨다면, 신청서에 기재한 금액 내용을 가져오시기 바랍니다.)

다음 페이지의 정보를 확인해 주십시오.

ISC 소득신고서비스예약 & 법적 책임 면제 동의서(계속)

소득신고서비스 예약에 앞서, 소득 신고에 필요한 모든 서류서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.

귀하는 캐나다 **이주 이래** 발생한 2016 년도의 모든 소득에 대해 신고하셔야 합니다; 이는 T-4 를 발급 없이 현금, 수표 등으로 받은 임시직 수입도 포함합니다.

지참하실 캐나다 소득 서류 (T-slips):

- 고용소득- (T4).
- 고용보험소득(EI) - (T4E).
- 정부지원금, 사회보조금 혹은 산재보험금 (WCB) 소득 - (T5007).
- 교육 지원금- (학자금 관련처 혹은 고용보험공단에서 받은) - (T5007, T4E, or T4A).
- 육아 보조금(UCCB)- (2015 년도에 18 세 미만 자녀 있었던 경우) - (RC62).
- 은행/투자 기관- (귀하의 은행 혹은 투자기관에서는 이자소득이 \$50 보다 적은 경우, T slip 발행하지 않기도 합니다. 이 경우, 1 년간의 은행거래정보를 참고하여 각각의 은행 구좌를 통해 받은 총 소득/이자 총액 정보를 확인해 오시기 바랍니다 (비과세저축구좌-TFSA-제외) - (T5 or T3).
- 장학금- (T4A).
- 노후보장적금 출금액- (T4RRSP or T4RIF).
- 시니어 소득: 은퇴 연금(T4A), 캐나다 국민 연금 (T4A (P)), 노령 연금(T4A (OAS)), 주정부 보조금(T5007).

지참하실 소득공제용 영수증의 예:

- 의료비용: 치과, 안과검진, 안경/콘택트 렌즈, 처방약 (일반의약품 제외). 다니시는 약국으로 문의하셔서 지난 해 가족들 앞으로 구입한 모든 처방 의약품 구입리스트를 출력 요청하십시오. 반드시 “Official Tax Receipts” 을 가져오십시오.
- 기부금: 반드시 “Official Tax Receipts” 이어야 합니다.
- 자녀 보육: 해당 기관의 상호와 주소가 반드시 포함된 영수증. 만일 자영 보육인에게 아이를 맡기신 경우, 서비스를 제공한 자영업자의 이름, 신념버가 포함된 영수증을 받아 오시기 바랍니다.
- 자녀 체육 활동: 축구, 춤, 수영 등 16 세 미만의 자녀의 체육 활동 관련 영수증. 반드시 “Official Tax Receipts” 을 가져오십시오
- 자녀 예술 활동: 16 세 미만 자녀가 예술적, 창의적 혹은 문화적 기술 개발을 위해 참가한 활동(예: 영어 외의 언어교육) 혹은 과외 및 스카우트 활동 관련 영수증. 반드시 “Official Tax Receipts” 을 가져오십시오
- 캐나다 내 이사 비용- 별첨 양식 참조 (담당 상담사에게 문의 바랍니다)
- 월정 교통 패스(일회용 티켓은 제외): 교통 패스와 금액이 명시된 영수증을 함께 지참하시기 바랍니다.
- 노후보장적금액: 은행에서 발급한 영수증과 2015 소득평가서(Notice of Assessment) 전체 페이지를 가져오시기 바랍니다(소득과 공제 내용이 나온 페이지만 가져오시면 안됩니다).
- 학비: (T2202A): -별첨 양식 참조 (담당 상담사에게 문의 바랍니다)

위의 내용에 문의가 있으실 경우, 담당 상담사 혹은 캐나다 국세청에 문의해 주십시오. 전화: 1-800-595-8281.

만일 귀하께서 캐나다 텍스 시스템에 관해 더 알고자 하신다면, 캐나다 국세청이 관련 동영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.

<http://www.cra.gc.ca/videogallery/>

주제어 중 “개인 및 가족을 위한 동영상 및 강의(Videos and recorded webinars for individuals and families)” 를 클릭하십시오.